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공포 : 2014. 5. 28. 시행 : 2015. 5. 2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편집자주]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주요내용

### ○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 지원(제6조의2제8항)

정부 및 시·도지사는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등 녹색건축물 사업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현 행	개 정
(신 설)	<p><b>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b>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li> <li>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li> <li>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li> <li>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li> <li>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li> <li>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li> <li>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li> <li>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li> <li>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li> <li>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li> <li>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li> <li>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li> <li>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li> <li>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의무화(제14조의2제2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일사조절장치를 비롯해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와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일사조절장치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 행	개 정
〈신 설〉	<p><b>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u>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p>
〈신 설〉	<p><b>제41조(과태료)</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4. 생략</p> <p>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5~9. 생략</p>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

현 행	개 정
<p><b>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b></p> <p>①·② (생략)</p> <p>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1. ~ 5.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b>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 .</p> <p>④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p> <p>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p> <p>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p> <p>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p>